

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	4340
--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06. 5. 1.

제 안 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주 문

- 가.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행위,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행위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「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15인으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앤이 유

국회는 2004년 8월 23일 「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중국의 동북공정 등 고구려사 왜곡행위에 대해 정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현지시찰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하여 왔고, 2005년 4월 6일 「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정부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대표단의 항의 방문 및 본회의 결의안 채택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,

지난 2005년 12월 31일 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어 각각 활동이 종료된 바 있음.

그러나 일본이 2006년 2월 22일 “다케시마의 날” 1주년 행사를 강행하였고, 최근에는 일본 해양탐사선의 독도주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(EEZ) 무단침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독도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,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행위,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행위를 바로잡고 진정한 한·일, 한·중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대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「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